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2월 25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

○대통령령 제18295호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개정령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후단중 “6월”을 “12월”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중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9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2월 25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김대환

○대통령령 제18296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나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5629호

관

부

2004. 2. 25. (수요일)

하며, 제4조의3(중전의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을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를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

- 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제18조제2항 전단중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로,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을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 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소득·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제4항 본문중 “6월간”을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령자”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6월간”을 “12월간”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중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를 “사업주로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

이 있는 자로서”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다만,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 는 그 규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2·제23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2·제23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을 “기간동안”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중 “제19조의2”를 “제15조의2, 제19조의2”로, “재고용장려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로 하고, 동항제2호중 “50세”를 “40세”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인”을 “300인”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취직촉진”을 “재취업촉진”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각각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제35조의2제2항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호의2중 “7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자로서”를 “7일 이상 계

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3제1항중 “월 30만원”을 “월 40만원”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중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④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사무의 규모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0조의3제1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고, 제74조제2항중 “과오납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며, 동조제3항중 “보험료등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는 “보험료등 과오납액”으로 보고, 제75조제2호중 “신고”는 “보고”로 보며, 제76조제3항제2호는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로 본다.

제88조제3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4.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

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

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
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
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
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
6967호)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의 법정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
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비
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
상으로 함(영 제3조).

나.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의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
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중
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5조의2 신
설).

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
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
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제3호).

라.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
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
하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의3 신설).

마.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68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